제21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 월 30 일

中个小砂利2号



여수시 조례 제1627호 붙임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627호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 경관과 관련 있는 공무원
 -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 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23조의2(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주전하는 시의원 2. 경관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위에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